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268

제 안 연월일 :2023년 9월 14일 제 안 자 :운 영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김기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57),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77호), 박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07호),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2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일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반영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보고 시기 및 대상이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예산반영현황'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인사청문관련 개정사항을 담은 두 개정안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운영 주체를 직위 후보자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합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과 연계해 운영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함.

○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조례 공포시기를 고려해 수정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시장 및 교육감이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당해 연도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반영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제4항 신설).
- 나.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5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 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에는 향후 예산반영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 다) 심의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6조(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 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 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시장 및 교육감은 직전 연도 5 <신 설> 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예산안에 반영 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반 영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제1항 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 심의전 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56조(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 제56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 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산하기 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1.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 장 ②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 | 에 따른 지방공사 및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

자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장

-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 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 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